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50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표○○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피고가 202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902,250원, 지방교육세 1,537,270원, 가산세 17,578,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출판업을 목적으로 2006. 7. 13. 설립되어 출판업, 도서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임차법인'이라고 한다)는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출판 서비스업, 영화제작 서비스업, 공연전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22.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영화제작 서비스업, 공연기획 및 전시 서비스업 등이다.

나. 원고는 2015. 8.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시 C 지상에 3층 공장(1층 235.735㎡, 2층 243.53㎡, 3층 168.0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0.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25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26. 임차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용부분 전부 약 470㎡(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 임차법인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차법인에 임대하였으나 임차법인이 이 사건 임대부분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26,902,250원, 지방교육세 1,537,270원 및 가산세 17,578,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공장용 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원고는 산업기술단지 안 공장용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인 임차법인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임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규정

이 사건 면제조항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정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면제조항의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이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은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그 이하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25조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7.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입주 계약'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인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된다.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가, 다, 바목은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가목),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목), 공연 등과 관련된 산업(바목)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법인이 출판 서비스업, 영화제작 서비스업, 공연전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영화제작 서비스업, 공연기획 및 전시 서비스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차법인은 2016. 8. 22.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위 영화제작, 공연전시 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문화산업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상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조시설'이 없어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법인에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는 이 사건 추정조항이 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이 사건 면제조항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이 사건 면제조항과 이 사건 추정조항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건축물'은 이 사건 면제조항의 '산업용 건축물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²⁾ 취지 참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어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이 사건 팔호규정상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 아니한다.

3) 임차법인이 이 사건 팔호규정의 '중소기업자'인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은 이 사건 면제조항 등이 포함한 규정들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법인이 2016. 8. 22.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³⁾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법인은 이 사건 면제조항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임차법인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산업단지 안 공장용 건축물(또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추정조항에 따라 원고가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관한 판례로, 위 규정은 본문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과 같이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취득세 면제 등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단서에서 이 사건 추정조항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규정한 것으로, 규정의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추정조항의 해석에도 위 판례가 취하는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유효한 소상공인 정의규정인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현행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출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임차법인이 출판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 임대한 경우 이 사건 면제조항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앞서 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지 참조), 달리 임차인인 중소기업자가 임대인과 같은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 사건 면제조항 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김○○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



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구 중소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